

의안 번호	1802	【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8. 20.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8. 20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9. 2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한영필)

가. 제안이유

- 대한적십자봉사회 울산중구지구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인도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3조)
 -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 -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
 -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
 -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
-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8조 및 제22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경희)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중구지구협의회가 인도주의적 실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로써

상위법령 등 검토한 바 조례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조례 제정 현황 (2021. 8. 31. 기준)

- 울 산 3개 시구군 (울산광역시, 남구, 동구 제정)

- 전 국 총 172개 시·군·구 제정